

안 내 문

수신: 전체 교원

제목: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련 규정·지침 제정 및 개정 안내

1. 관련

- 가. 천안산단-590(2022.12.30.)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25차 개정 상신'
- 나. 천안산단-592(2022.12.30.)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차 개정 상신'
- 다. 산학협력지원팀(서울)-212(2022.12.28.) '산학협력단 물품관리 규정 개정'
- 라. 천안산단-591(2022.12.30.)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연구원 임용지침 제정 상신'
- 마. 산학연구관리팀(서울)-1197(2022.12.30.)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지침 및 세부기준 제정'

2.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련하여 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및 개정하오니 연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25차 개정

- 1) '연구비 집행 정지' 및 '연구의 중단' 조항 신설(제9조제5항, 제16조)
- 2)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각종 다과' 문구 삭제(제9조제3항)

4. 연구활동비

사의 2.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다과 및~~ 소모성 물품 등 필요 경비를 말하며 연구자는 과도한 집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에 따라 개인성 물품 구매가 불가

3) 외부인건비 월기준 인건비 상향(별표1)

<변경 전>	<변경 후>
학사급 연구원: 2,100,000원	학사급 연구원: 2,200,000원
석사급 연구원: 2,700,000원	석사급 연구원: 3,000,000원
박사급 연구원: 3,500,000원	박사급 연구원: 3,800,000원

※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학생인건비 월기준 인건비 상향에 따라 연구원 인건비를 현실화

4) 식대 1인당 한도액 인상(별표4)

<변경 전>	<변경 후>
식대 1인당 한도액: 13,000원	식대 1인당 한도액: 20,000원

※ 물가, 배달비 등이 많이 인상됨에 따라 식대 금액을 현실화

5) 물품·시약·용역 구매 기준표 변경(별표10)

<변경 전>	<변경 후>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필요 견적서 개수: 3개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필요 견적서 개수: 2개

※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우리 대학의 기준에 맞춰 필요 견적서를 줄임

나.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차 개정

1) 학생인건비 단가 책정 기준 변경(제9조)

<변경 전>	<변경 후>
학사과정: 1,000,000원	학사과정: 1,300,000원
석사과정: 1,800,000원	석사과정: 2,200,000원
박사과정: 2,500,000원	박사과정: 3,000,000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학생인건비 최소 단가 금액 상향

다. 산학협력단 물품관리 규정 개정

- ※ 소모성 물품 관련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기계기구나 집기로 분류하여 등재 및 관리
-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고가의 부속품 및 소모품 관련 관리 기준 마련

라.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연구원 임용지침 제정

- ※ 연구원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문화
- ※ 2023년 연구지원 체계평가 평가지표

마.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및 세부기준 제정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작일(연차과제인 경우 해당 연차 시작일)이 2023. 3. 1. 이후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 방식을 변경함
 - 연구개발과제 간 상호평가를 통해 지급률 차등 적용
 - A등급: 상위 70% 이하 - 간접비의 10% 지급
 - B등급: 상위 70% 초과, 90% 이하 - 간접비의 9% 지급
 - C등급: 상위 90% 초과 - 간접비의 8% 지급
 -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자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참여연구자에게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차등 지급
 - 연구책임자는 과제종료 시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평가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직전 회계연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매년 8월 이내 지급 예정
 -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를 변경함

4. 시행일: 2023. 1. 1.부터 시행

- 붙임 1.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25차 개정)
2.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1차 개정)
 3.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 개정(1차)
 4.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외부 연구과제 연구원 임용지침(제정)
 5.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지침(제정) 끝.

2023. 1. 2.

- 천안산학협력단장 -